

예 산 총 칙

제1조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 예산총액	일시차입 한도액
계	1,056,207,315	31,686,215
일 반 회 계	963,809,155	28,914,274
특 별 회 계	92,398,160	2,771,941
기 타 특 별 회 계	15,836,001	475,077
• 주 택 사 업 특 별 회 계	78,993	2,369
• 교 통 사 업 특 별 회 계	9,176,849	275,305
• 의 료 급 여 기 금 특 별 회 계	6,535,829	196,074
• 자 원 순 환 특 별 회 계	25,630	768
• 발 전 소 주 변 지 역 특 별 회 계	18,700	561
공 기 업 특 별 회 계	76,562,159	2,296,864
• 상 수 도 사 업 특 별 회 계	23,121,154	693,634
• 하 수 도 사 업 특 별 회 계	51,380,005	1,541,400
• 공 영 개 발 사 업 특 별 회 계	2,061,000	61,830

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“세입·세출예산”과 같다.

제3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“해당없음”

제4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“계속비사업조서”와 같다.

제5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“명시이월사업조서”와 같다.

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,245,100천원으로 한다.

제7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(공기업 특별회계 포함)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45,400,000천원으로 한다.